

# 대한소화기학회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간호사 참가지원(支援) 운영규정

## 제 1조 (명칭)

본 규정은 "대한소화기학회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"이라고 한다.

## 제 2조 (목적)

대한소화기학회 주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참가 지원자의 선발과 지원 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3조 (지원대상 학회)

국내에서 진행되는 대한소화기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 중 이사회에서 선정한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한다.

## 제 4조 (지원자의 자격)

대한소화기학회 주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.

- 대상 학회에서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(연제 당 발표에 참가하는 1인만 지원 가능)
- 다른 형식의 등록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(연자, 좌장, 임원, 위원 자격 등) 제외한다.

## 제 5조 (지원 신청)

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신청서(학회양식참조)
2. 초록 사본(지원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, 발표자는 밑줄을 추가)
3. 초록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메일 등)

## 제 6조 (참가지원 대상자 선정)

### 제 1항 (선정위원회 구성)

선정위원회는 이사장 및 약간 명의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.

### 제 2항 (선정기준)

선정위원회에서는 본 연구의 우수성 및 학회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.

1. 지원신청자가 초과된 경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.
  - 가. 초록 1편당 발표자 1인을 우선 지원
  - 나. 최근 1년간 대한소화기학회 주관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수혜 여부 고려
    - 선정 후 비참석자는 참석으로 간주
2.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  - 가. 구연 발표자
  - 나. 학회 기여도가 높거나 본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
3.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 지원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

## **제 7조 (지원 범위)**

제 1항: 사전 등록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## **제 8조 (수혜자 의무)**

제 1항 (품위 유지)

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참석 시 학술대회 지원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
제 2항 (정산 서류)

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15일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할 수 있다.

1. 학술대회 참가결과 보고서(학회양식참조)
2. 학회등록비 영수증 원본

제 3항 (수수료)

학회는 지원금에서 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.

## **제 9조 (지원 예산)**

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회 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.

## **제 10조 (부칙)**

제 1항: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제 2항: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.